

강력한 기업처벌의 필요성

민주노총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교안 해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2017년 4월

1/ 민주노총은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구 기업살인법)에 주목하는가?

한국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다. 사고 초기에 제기된 대책들도 사고가 빠르게 잊혀지면서 함께 사라졌고, 정부부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의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내놓았으며, 전문가 수준에서도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사고나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이나 지하철 1인 승무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이 제기 되었으나, 사고 이후 사회적 관심이 줄어줄면서 대책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전국에서 국가 안전 대 진단이 벌어진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기업의 안전관리의 외주화, 관피아로 상징되는 민관유착의 구조적 병폐 등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필수적인 안전조치에 관한 기업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세월호참사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들은 기업의 안전투자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많은 안전관련 법안 또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와 시민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참사의 배경에는 기업이 이윤추구 내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

민주노총의 기업처벌법 제정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어 왔다. 이는 기업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한다. 기업은 처벌받은 노동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기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안전의무의 준수를 사회적·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하여 효과적인 형사 처벌을 담보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 산재 현황

최근 14년간 매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다. 2015년에는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50여명이 재해를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며,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재해를 뿐만 아니라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1만 명 중 산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OECD 1위이고,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산재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 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원)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7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186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7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3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363,293	35,968	2,411,239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분류 없어 조정 못함	
평균	90,866	2,398	160,749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도무지 줄지 않는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방책은 통계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다. 2013년 3월 노동부가 발표했던 2012년 산재통계에서 2114명이었던 전년도 산재사망자수가 지금은 1860명으로 254명이 사라졌다. 최근 10여 년 산재사망 통계도 모조리 수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사망자통계를 그대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을 변경해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 숙박업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 사망자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실제 예방할 수 있는 산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다.

우리나라는 출퇴근 재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재해는 산재 적용도 안 된다. 대표적으로는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화물, 버스, 퀵 서비스, 택배, 건설 장비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가 다발하는 직종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되어 산재통계에서 빠져 나간다. 이런 조건에서 사업장밖 교통사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발표한 것이다. 실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신, 통계 수치 감소에만 급급한 것이다.

3/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며,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재해를 뿐만 아니라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1만 명 중 산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OECD 1위이고,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부의 홍보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먼저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아예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산재보상체계는 산재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및 어선원·어선재해보상 보험법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중 노동부 산재통계는 산재보험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타 보상체계에 의한 산재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지난 10년간 75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우체국의 산재는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또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와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구분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	증감율
○ 재해율(%)	0.50	0.53	-0.03	-5.7
○ 사망만인율(‰)	1.01	1.08	-0.07	-6.5
○ 사고사망만인율(‰)	0.53	0.58	-0.05	-8.6
○ 재해자 수(명)	90,129	90,909	-780	-0.9
- 사고재해자 수	82,210	83,231	-1,021	-1.2
- 질병재해자 수	7,919	7,678	241	3.1
○ 사망자 수(명)	1,810	1,850	-40	-2.2
- 사고사망자 수	955	992	-37	-3.7
- 질병사망자 수	855	858	-3	-0.3
○ 근로자 수(명)	17,968,931	17,062,308	906,623	5.3
○ 사업장 수(개소)	2,367,186	2,187,391	179,795	8.2

2005년 이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산재통계상의 노동자 수가 10년 사이 600만 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산재사망자 수는 2009년 이후 1900명 내외로 큰 진전이 없고, 재해자수는 오히려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소강상태다. 노동부가 말하는 산재율 감소는 급격히 증가한 노동자 수 증가의 영향이 큰 것이다. ‘기타의 사업’이 많이 늘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돼 있다.

4/ 산재율은 낮는데, 산재사망은 세계최악!

사망 재해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데도 재해율이 5분의1에 불과한 것은 통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통계는 산재율이 낮은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 은폐의 실태를 증명할 뿐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현황 분석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서 국민 부담액은 매년 평균 600억원에 달했다. 응급실 기반 조사에서는 산재보험 대상 중 산재 처리하는 노동자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연구는 산재의 실질 규모가 정부 통계의 13~30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 이른다. 작업장 산재은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제도를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공상처리(회사가 치료비를 보상)로 악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산재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산업재해를 공상처리로 유도해 은폐를 조장하는 것이다.

5/ OECD 주요국 산재사고 사망률

이렇게 갖은 예를 썼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OECD 산재사망 1위다. 사망만인률은 6.8로 그 다음 순위인 칠레, 터키, 멕시코 등 보다 월등히 높고, 영국의 11배, 일본이나 독일의 5배에 달한다.

도무지 줄지 않는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통계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다. 2013년 3월 노동부가 발표했던 2012년 산재통계에서 2114명이었던 전년도 산재사망자수가 지금은 1860명으로 254명이 사라졌다. 최근 10여 년 산재사망 통계도 모조리 수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사망자통계를 그대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을 변경해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 숙박업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 사망자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실제 예방할 수 있는 산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게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다.

우리나라는 출퇴근 재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재해는 산재 적용도 안 된다. 이런 조건에서 사업장밖 교통사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발표한 것이다. 실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신, 통계 수치 감소에만 급급한 것이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는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12월31일까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 입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태)

6~9/ 어떤 노동자가 죽어나가는가?

우리나라는 재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도 앞 다투어 외주화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40%로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30개 기업의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은 95%에 달한다.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는 유해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청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보다,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여 얻는 이득을 더 중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30개 기업 2015년 개별실적오염제 적용 산재보험료 할인내역		
30개 기업	사업장 소수	할인액(백만원)
삼성	84	-100,999
현대자동차	161	-78,534
한국전력공사	75	-13,740
한국토지주택공사	22	-2,067
엑스케이	117	-37,977
엘지	147	-37,917
롯데	124	-26,541
포스코	72	-26,252
지엑스	76	-20,194
한국도로공사	75	-1,035
한화	95	-16,936
현대중공업	31	-22,810
농협	66	-7,773
한국가스공사	27	-1,223
한진	54	-7,039
두산	37	-14,126
케이티	36	-13,788
신세계	29	-10,243
씨제이	115	-8,969
에스케이차량사	3	-276
부명	13	-1,858
일렉스	63	-2,632
한국수지합성공사	62	-929
대우해양조선	13	-9,477
대림	23	-19,346
한국철도공사	17	-5,715
한국석유공사	11	-278
금호석유화학	29	-3,939
현대백화점	30	-1,921
현대	15	-3,583
합계	1,722	-498,117

자료 : 고용노동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해서 사고 예방 드는 비용도 하청에게 넘기고, 처벌도 하청에게 넘기고 빠져 나간다. 게다가 원청에서는 사고 발생이 줄었다고 수백억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도 깎아 주고 있다. 위험 업무 외주화로 대기업이 받는 산재보험료 할인은 2015년에만 4천981억. 0.7%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34%를 감면받았다. 최근 3년

간 30대 재벌기업들은 1조 3천억이 넘는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10~1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_세월호

산재사망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과와 보상을 운운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재판과정에서는 무혐의와 하급관리자의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기업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 우리 법체계가 ‘꽤 잘 작동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횡령·배임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선박안전법 위반이 전부이다. 횡령·배임을 제외하면 적용되는 형량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하여 삼풍그룹의 이준 회장 등 최고경영진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기는 하다. 이 사건에서는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보강공사를 지시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에서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 것은 그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화물과적을 적극적으로 지시 내지 용인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유병언 회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병언 회장은 ‘사망했다’고 한다.

이처럼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재해사고에서는 기업의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리책임자 정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청해진해운’ 기업은 고작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선박기름배출)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는 “업무상과실로 세월호가 좌현 뒷부분부터 침수되면서 바다에 매몰되어 유류탱크의 에어벤트(통풍관) 등을 통하여 병커C유 139킬로리터(kl), 경유 39킬로리터(kl)와 윤활유 36킬로리터(kl) 등 연료유로 사용되는 총 214킬로리터(kl) 가량의 기름을 주변해상으로 배출” 한 기름유출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상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선박복원성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운항을 지속하였고,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화물과적과 고박부실을 일삼았던 기업이 청해진해운이지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형사책임도 지지 않았다.

1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_가습기 살균제

가습기살균제로 1천명 이상의명의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1년 8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간질성 폐질환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이 옥시 등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유해성실험 사실을 은폐하였고,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실험결과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였다는 의혹, 그리고 원료공급에서부터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기업들이 유해성물질의 안전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르듯이, 이 참사는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이다.

하지만, 제조·판매 책임자들은 최고 징역 7년형이 선고되고,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 검증 및 실증자료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 이란 거짓 문구 등 사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이 인정되어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기업 자체에는 1억5천만원 벌금
- 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무죄로 판결났다.

존 리 전 대표에게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유해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7년이 최고(검찰은 20년 구형)인 셈이다.

13/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_삼풍백화점

1995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502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낳은 대형 참사로, 1000여 명이 사망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2013년) 전까지 세계 건물 붕괴사고 사상 최다 사망 사고였다.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삼풍그룹,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7년6월 + 3년)	징역 7년 6월 (업무상횡령 무죄로 3년 감형)	상고 기각
삼풍백화점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징역 7년	향소 기각	-
서초구청장 (이충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황철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2년 6월 추징금 1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판결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 시설 관리 노동자들과 5층 식당 관계자들, 인근 주민들은 균열과 이상 징후를 느끼고 제보하거나 문제제기 했다. 백화점 시설부 회의에서도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5년을 삼풍백화점의 '확장 원년'으로 결정한 경영진의 방침에 가로막혀 그 주장은 묵살되었다. 사이렌은 울렸지만 안내 방송은 하지 않았고, 붕괴 직전에 자신들만 대피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 보강 공사를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들도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충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황철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4/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_대구지하철화재

대구지하철 공사 도중에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1995년, 101명 사망), 지반 붕괴 사고(2000년)에 이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까지, 총 세 차례나 대형 사고를 경험했다. 영국에서 1863년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중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는 총 3건 중 2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을 두 번이나 겪었다면 지하철에 관해서는 안전에 더욱 민감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질 법도 하지만,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그 변화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2인 승무였다면 초기의 대응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1인 승무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최초에 화재가 발생했던 1079열차의 기관사는 화재가 발생하자 운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이동해서 우선으로 화재 진압 조치를 했다. 그래서 당시의 1079열차의 기관사는 관제에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고 화재 진압의 현장 조치만 했다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6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	-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상고기각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상고기각

대구 지하철 화재 판결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1인 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 상황 대처, 승객 대피, 사령 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

던 것이나 비상 유도등·피난로·소화 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기소가 되긴 했지만,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 사고 직후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물청소로 시신이 사라졌지만 증거 인멸 혐의만 걸렸다. 그나마도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전 관리, 사고 관리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15/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_마우나리조트 붕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천정이 붕괴되면서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총 10명이 사망하고, 194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에서는 부실 시공을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체육관 기둥과 지붕 등에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고, 불법 시공이 이뤄졌으며, 설계 또한 임의로 도면을 변경하는 등 총체적인 불법 시공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코오롱이 있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에 신축된 체육관은 코오롱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건축이었다. 그리고 리조트 측은 계속되는 대설 속에서 진입로와 주차장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은 했지만 다중이 이용하고 적설하중이 제곱미터당 50킬로그램으로 설계돼 붕괴 위험이 있는 체육관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 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고의 근본 원인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공기 단축뿐 아니라 폭설에 대한 관리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공을 맡은 하청 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 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은 2심에서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 업체 구조상 하청 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원청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 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 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향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원청) S종합건설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표 4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판결

16/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_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

일시 : 2013년 3월 15일 20:50경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하동 대림산업 HDPE공장 저장조

피해상황 : 사망 6명, 부상 11명

원인 : 사일로(Silo · 저장탑) 내부에 남아 있던 폴리에틸렌(HDPE) 분말에서 발생한 가스에 용접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폭발

● 사고 경위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면 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나,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들은 원청 및 하청업체로부터 어떠한 작업관련 안내 및 교육을 받지 못함

잔존가스에 대한 100% 퍼지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잔존가스 체크시 데드존(dead zone)에 대한 체크유무를 확인해야 함

사고 발생 지역 바로 3m 옆에서 작업하도록 되어있던 파이프 배관교체작업이 퍼지가 완

료되지 않아 중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일로 보수작업구간만 강행되었음
원청 사업주 불기소

	적책	죄명	향소심	최중심
원청회사	대림산업(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 법은 무죄	(파기환송) 벌금 3,500만원
	대림산업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 법은 무죄	(파기환송)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회사	유한기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유한기술 제작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유한기술안전팀 과장(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 원

● 법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을 이유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 인정, 가중처벌

● 구조적 원인은 공장장 책임?

구조적인 원인은 공장장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음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체’에 대한 책임(경영책임자, 기업)이 별도로 물어져야 함

● 구조적인 원인의 주체, ‘대림산업’은 1,2심에서 무죄

대법원만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결정

하지만, 기존에 선고 받았던 벌금 3천만 원에 덧붙여 벌금 5백만 원만 추가로 선고

기존 3천만원도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 책임으로 이러한 벌금형을 부과 받는 것

중대한 사망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 유발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음

17~18/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실태_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 누출사고

일시 : 2013년 5월 10일 01:45경

장소 :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공장

피해상황 : 사망 5명(협력업체 한국내화 직원)

원인 : 전로 내 내화벽돌 축조사업을 하던 중 아르곤(Ar)가스 유입에 의한 산소결핍

사고 경위

고로에서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인 전기 용광로 안에서 일하던 중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산소 부족으로 사고

투입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용광로에 아르곤 가스가 있는지조차 모른채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투입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 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 (검찰)
	생산본부장(부사장/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중대재해예방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 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 사회봉사 160시간

● 산업보건법상 위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 시민단체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23조(사업주 안전조치 책임), 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 위반

현대제철 법인과 우유철·박승하 사장(복수 대표이사) 고발 -> 무혐의

- 검찰

근로보수작업 총책임자인 현대제철 생산본부장 및 직원 8명
하도급업체 한국내화 부사장을 포함한 직원 3명 등 총 12명을 기소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리

- 법원

현대제철 벌금 5천만 원
생산본부 총괄책임자였던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부사장은 산소측정기를 지급해야 할 곳은 하청업체라면서 항소, 2심에서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원청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벌금만 부과

19/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남발하급관리자에게만 꼬리 자르기식 처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처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원청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미미하다. 특히, 산재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 될 수 있는 각종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은 원청에게 책임부여가 되어 있는 일부 조항의 경우에도 하청과 공동 책임의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양벌조항의 적용으로 기업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하기에 법적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말단의 하급관리자만 처벌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20/ 산재 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사전 예고하는 노동부 점검에서도 점검 대상 사업장의 90%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
위반사항에 대해 80%는 시정조치 이고, 과태료 부과는 20% 미만
사업장 평균 과태료도 95만원 수준이고, 시정조치는 사후 현장 개선에 대한 사후 점검도 없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살인법 등이 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다.

21/ 해외의 기업처벌법 - 영국

- 사고

1987년 3월 6일 영국의 프리 엔터프라이즈호는 출항한 지 2분 만에 침몰
뱃머리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 출항하여 대량의 바닷물이 뱃머리로 들어와 침몰
193명의 탑승자 및 선원들 사망

-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

문을 닫는 임무를 맡은 부갑판장 (선실에서 잠)

문이 닫혔는지 확인할 임무가 있던 1등 항해사 (부갑판장이 할거라 생각)

모든 것을 감독해야 하는 선장이 지목 (개폐여부 확인 신호기 없음_회사 설치 거부)

- 7명이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운항사인 P&O 유러피언 페리사 판례법상 기업 살인혐의로 기소

최초로 개인이 아닌 기업을 살인혐의로 기소

선장과 1등 항해사 2명의 선원을 제외한 5명의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은 무죄 판결

- 법리적 한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여러 단계로 분산되는 거대기업의 경우 처벌하기가 어려움

-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운동결과

22/ 해외의 기업처벌법 영국과 호주, 캐나다

24~26/ 시민과 노동자를 위협하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원인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

27~29/ 민주노총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의 경과와 문제의식

민주노총은 2003년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매번 사고에서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주장은 다분히 선언적이 었다.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본격화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된 것은 2008년 인천 냉동창고 사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기업이 2,000만원의 벌금에 그친 사실과 2011년 인천공항철도 사고에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심야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2012년 이마트 냉동 설비 4명 사망사고에 직면하면서 부터이다. 사망사고, 특히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해도 기업, 특히 원청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2년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금속 법

를원, 교수진, 노무사등으로 연구진을 꾸려 공동으로 법안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개정안을 정식화 했고,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의 기조는 첫째,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어야 하다 둘째,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셋째,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원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 산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이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2개 법안이 같이 발의되었다. 국회 법안 발의와 병행하여 조합원 교육, 언론사업, 집회 등등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을 초청하여 국제 포럼을 개최하면서,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게 된 문제의식과 입법 추진 경과, 법 적용 현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색은 이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공무원 처벌도 포함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입법 청원운동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함께 진행해 왔다. 법안을 재 정비하고,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그 어떤 법안도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2012년- 2013년 삼성, 현대제철, 현대중공업등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과,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최고위원까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는 않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삼성병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벌받지 않았고, 2016년 검찰조사로 드러나고 있는 가슴기 살균제 참사도 밝혀진 진실에 비해 과연 누가 어디까지 처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답답한 상황이다. 매년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 산재사망도 사고당시에만 요란할 뿐 결국 그 어떤 책임 있는 처벌도 없이, 죽음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위험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27~29/ 민주노총의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는 기업과 정부 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위

무엇보다 기업 살인법 제정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는 기업과 정부 정책 및 조직의 구조적인 살인행위” 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각종 사고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협소한 안전규정 준수여부나 기술적 위반 등을 중심으로 처벌해 왔기에 처벌대상도 하급직원이 되고, 처벌형량도 낮았다. 심지어 산재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무혐의가 되고, 사고이후 점검에서 안전규정 위반으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을 모아 발표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마트 냉동설비 수리 작업 중 4명의 사망사고에 대해 이마트가 받은 처분은 사고이후 점검결과로 받은 10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처벌이 반복되다 보니, 강남역 사고도 안전 메뉴얼 준수여부가 쟁점이 되고,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과실로 사건 종결이 되는 결과가 되었다. 구의역 사고에서도 초기 서울 메트로가 2인1조 작업 안전 메뉴얼을 안 지켰다며 하청업체나 사망한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조사와 처벌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고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철도사고에서는 사고조사를 받던 기관사 노동자가 자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가 사고당사자나 말단 관리 책임 당사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충분히 조직적, 구조적으로 예방 가능한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가 개인의 잘못이나 우연적인 요소, 혹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나가야 예방대책을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도록 강제 할 수 있다. 사고가 하나 발생하면 관련 규정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산재예방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결국 그 규정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전보건체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입맛에 따른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인 허가나 감독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동일하다.

둘째. 처벌만이 능사인가? 한국에서 처벌이 중요한 까닭은?

기업 살인법 제정 관련 논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처벌강화는 예방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문제의식이다. 두 가지 방향에서 이러한 제기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예방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강화와 예방대책 강화는 즉각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 라는 문제 의식 속에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재은폐가 드러나야 한다. 예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안전감독을 강화 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등등의 제안이 제기된다. 노동자, 시민 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 동안 민주노총과 안전보건 단체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투쟁을 해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것은 너무나 구멍이 많은 안전감독과 현장에서 휴지조각처럼 되어 있는 많은 안전규정의 대부분이 기업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항들이 기업이 해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반시 기업에 대한 처벌이 현행을 유지한 상태라면 감독도, 안전규정도 사상누각을 다시 한번 더 쌓게 되는 기존의 실패한 예방대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처벌 강화는 기업이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감독이 현장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안전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의 예방대책들이 실효성을 갖는 것은 이미 안전시스템이 사업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기반에는 위반 시 기업 활동에 큰 장애를 받을 정도로 처벌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규정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과연 규정 위반에 대한 기업의 처벌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았는가 라고 말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오류중의 하나는 특정 조항이나 법안에 대한 단순 비교이다. 민사 소송, 집단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안들이 보장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도 훨씬 강한 외국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고찰하면서 논의가 진행될 때 한국에서 왜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형사 처벌의 강화 외에 영업정지, 과징금, 명단 공표 등 다양한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제기이다. 개인적으로는 처벌의 유형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로 고정화된 주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전에 있는 다양한 처벌 방안의 현실을 고려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대재해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권이 노동부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의 세금을 주요한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파장 등을 정치적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영업정지 요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그 대상도 대기업은 다 빠져 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했으면 한다.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있고, 그에 갈음하여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와 하위 시행령 규정을 통해서 전경련, 경총, 환경부가 이 법을 무력화 시켜 버렸다. 이러한 사항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의 경우에도 현재 산재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제도가 있고, 위원회 기업도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 하는 입법예고도 된 상태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노동부의 명단 공표를 보면, 언론에서 주목했던 기업들은 명단에서 빠져 있고, 잘 들

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하나는 현행의 명단 공표가 원 하청 산재가 제대로 합산되어 공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명단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과 연관된 재해>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기업이미지를 위해 <법위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재해>로 만들어 명단 공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한다. 기업을 조직적으로 처벌하는 다양한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병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은 기간의 고민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제출되어 있는 명단공표와 영업 정지 요청이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변화이지만, 현재 처벌 규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지 않고, 법조문에 최대한 담아내는 방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린다.

셋째, 현행법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의 처벌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현재의 숨방망이 처벌에 검찰과 법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한편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초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당시 노동부의 입장이 이랬다. 그러나, 몇 년동안 공방이 지속되면서, 현재 노동부도 현행의 법으로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또한 원청 처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기업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현행의 법 규정과 논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처벌과 관련된 법의 한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처벌문제가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목적으로 유병언 잡기에 생난리를 쳤던 정부와 각종 죄목을 이 잡듯이 뒤져 항목을 늘려서 처벌형량 더하기로 포장하려 했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반복은 기존에 그나마 처벌 형량이 강했다고 하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여러 사고의 반복을 보여준다. 기업 살인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2014년 기업살인법 국제 포럼을 하면서, 이미 기업살인법이 제정된 영국, 호주, 캐나다등을 초청하여 법 제정운동의 경과도 듣고, 현재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단편적이거나 공유할 수 있었다. 2003년 가장 먼저 이 법을 제정한 캐나다의 경우 법 제정과정에서 실제 수사, 재판 등에 대한 하위 규정 등을 꼼꼼이 규정하지 못하여, 실질 법 적용과정에서 난항이 있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것은 우리가 기존의 선례를 바탕으로 보완해 나가야할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업 살인법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가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한 획을 긋지 않는다면,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 전문가의 법 논리 대결에서만 그치지 않고, 법 제정을 위해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하는 가라는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법안 발의에만 그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정치행위로만 한정했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질적 입법으로 열매를 맺는 20대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

첨부자료

- 첨부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 첨부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활동 및 법안 설명
- 첨부 3. 외국의 기업살인법 비교표
- 첨부 4. 국내 기업처벌 현황

첨부자료 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법률 제 호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 사.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 아. 「항공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2. “위험물업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나.항의 관계가 있는 자
 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②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위 각 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법인 또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원료나 제조물의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첨부자료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활동

I.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 참여단위

- ✓ 416연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총 21개 단체

☑ 활동

- ✓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832명(416+416)의 목소리를 담고, 소개의원 18인이 입법청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도 진행했습니다.
- ✓ 출범 이후, 중대사고 대응, 기업 고발투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선전사업, 살인기업 선정식 결합, 세월호 참사 사진전 참여,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 관련 사업 지원 및 대응과 연구과제 수행 등을 주요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의원입법발의도 진행하였으나, 법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채로 19대 국회가 마감되었습니다.
- ✓ 416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전문가 연구과제 중 '기업의 안전의무 강화 및 효과적인 처벌방안 모색' 연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주로 참여하여 '안전사회 실현과제 보고서'에 내용이 담기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 ✓ 20대 국회를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를 6월 23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공동주최로 진행하였습니다.

II. 제안이유

-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 ☑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 ✓ 이 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 ✓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 ✓ 그런데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였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은 적용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이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 이들에게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도 처벌됩니다.
- ✓ 또한,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 사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비해 조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1명은 사망, 1명은 상해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에는 1명을 기준으로 한 형을 합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합산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 ✓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 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위 여수 산업단지 사고에서도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3,500만원입니다.
- ✓ 이런 현실 하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 ✓ 지금도 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 을 마련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이 마련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는 ‘종속모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과 ‘독립모델’ (행위자와 별도로 처벌한다는 의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종속모델’ 을 따르고 있습니다.

☑ 기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 ✓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용인하는 흐름이 있을 때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3 : 외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1. 호주 준주 “산업 살인법”

국가	호주 (준주) *준주: 수도 캔버라가 있는 주
제정년도	2003년
법안명칭	산업 살인법/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형법 1900 수정
대상	산업재해
피해대상	-종사자 (worker) / -하청 노동자 - 재택근무자/ -건설, 수습생/ -자원봉사자
처벌대상	①기업 (원청, 하청) ②정부 상급관리자 -장관, 정부기관 최고경영자 (CEO) -정부 또는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한 최고경영자 등 ③ 기업 - 감독, 업무책임자 -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자 - 기업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자 - 기업의 지배인, 자산관리자, 청산인 등
적용규정	1) 고용주의 노동자가 -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후에 사망하고 - 고용주의 행위가 노동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 고용주가 노동자, 다른 고용주의 노동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부주의, 또는 과실 2) 고용주와 상급관리자의 부작위 -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 - 고용주의 행위,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
처벌내용	- 벌금 : 개인- 25만달러 / 기업 - 125만달러 - 징역“ 25년 형 * 두 가지 처벌을 병과 할 수 있음 * 처벌의 기업 비용 최고한도 : 500만 달러 (약 60억)
기타 처벌	- 유죄 판결시 법원은 처벌에 대신, 혹은 부과하여 명령 가능 - 법원의 조치 공개 : 위법행위, 사고 결과, 처벌과 명령 (신문, 방송광고, 기업연간보고서 공지, 기업주주 공지 배부 - 법원 명령 실패 시, 산업안전위원의 신청으로 기업의 조치 이행, 기업의 실패 공표 명령
사망 만인률 변화	- 2003년 2.30 --> 2004년 2,00 --> 2009년 1.90 으로 감소

2. 캐나다 “단체의 형사 책임법”

국가	캐나다
제정년도	2003년
법안명칭	단체의 형사책임 법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제정배경	-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에서 26명의 광산노동자 사망. - 사고 후 주 정부는 공개조사 선언. 광산의 내부 시스템, 안전보건 법 무시. 기업의 광부 협박과 해고 위협, 정부의 허술한 감독 등 종합적 문제 - 캐나다 노총과 철강노조의 “ NO MORE WESTRAY” 투쟁 전개
원칙조항	- 217. 1 : 일을 하거나 업무 수행 방법 지시에 책임이나 권한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들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나 업무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 부여
대상	산업재해, 일반 재해
피해대상	종사자 (worker)/ 일반시민
처벌대상	- 공공단체, 법인, 협회, 회사 (company, firm) , 동업,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사단
적용규정	① 부주의 입증 기소 - 단체 대표자중 1인이 위법행위 당사자, 대표자중 2명이상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와 관련 - 책임있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② 잘못을 입증 기소 (적어도 일부분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 상급관리자중 1명이) -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 하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 - 위법행위를 구체화 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기 위해 지시하거나 -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거나, 되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지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내용	① 개인 - 부상 : 최대 10년의 징역 / - 사망 : 무기징역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② 기업 - 전과기록 / - 보호관찰 /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
기타 처벌	- 위법행위로 고통 받은 자들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 단체의 추가적인 위법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준, 절차 마련 - 정책, 기준, 절차 대표자와 논의, 이행을 법원에 보고, 준수할 상급관리자 지정 - 일반인에게 공표 : 위법행위, 법원 판결, 재발 장치를 위한 정책. 기준, 절차
사망만인률 변화	- 2003년 6.10--> 2004년 5.80으로 감소

3. 영국 기업살인법

국가	영국
제정년도	2007년
법안명칭	기업 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Manslaughter / 스코트랜드: Homicide
제정배경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승객 150명, 선원 38명 사망: 법원 과실치사 위반 없음 - 1997년 철도사고 자동경보시스템 문제 7명 사망, 151명 부상: 법원 과실치사 위반없음 - 2001년 철도사고 이상 확인된 열차선로 탈선 4명 사망, 70여명 부상 : 법원 기업 과실치사. 임원 과실치사 모두 위반 없음 - 영국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
원칙조항	- 제1조3항 한 개인의 행동 초점 보다 상위 경영진의 조직 관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대상	모든 사고 대상
피해대상	사람 (person 노동자, 시민 구분 없음)
처벌대상	기업, 정부 (정부부처의 서비스), 경찰(수용자, 구금자등), 동업회사,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개인은 기업살인법 대상 아님. 기업살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 판결 가능
적용규정	- 사람의 사망을 유발 -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의 관련 관리의무에 중대한 위반(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 고위 경영진 (의사결정, 실질적 관리, 구성)에 의해 조직체가 관리 구성되는 방식으로 사망을 유발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내용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지침 상 기업의 1년 총 매출액 5%- 10%범위/ 악의적인 경우는 10% 이상 * 양형 고려요소 - 사망 1명 이상이거나 부상 동반 - 감독관, 노조, 노동자, 일반사람의 경고나 조언에 주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문제 비용 삭감 - 안전관련 허가를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미 준수 -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상 (개인적 환경, 흡사당하기 쉬운 사람 포함) - 기업 주식 소유자의 재정 손실, 기업의 벌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 민사상 보상에 대한 책임은 처벌 양형에 관련 없음 - 악성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오더라도 수용가능함
기타 처벌	- 위반 구제 명령 : 재발방지 대책 집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증거 제출 요구, 구제명령 불이행 시 기소. 벌금 - 유죄 판결 공개 명령: 유죄 판결 사실, 위법행위 사항, 벌금, 구제명령 조건 등에 대한 공개 명령. 불 이행시 기소 벌금
사망만인률 변화	- 2007년 0.70 --> 2008년 0.60 --> 2009년 0.40으로 감소

* 영국 기업 살인법 적용 사례

년도	기업명	사고내용	처벌
2011	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	해자가 붕괴되어 시험광구 샘플 채취하던 노동자 사망	- 385,000 파운드 벌금 - 기업 연 매출액의 250%
2012	R v JMW Farms	돼지 사육농장 노동자 리프트에서 떨어진 금속 휴지통에 맞아 사망	- 187,500 파운드 - 기업 연매출액의 18%
2012	리용 스틸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노동자 추락사망 -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법, 고공안전규정 위반을 각각 기소	- 480,000 파운드 - 산안법 위반 건은 계류중
2012	R v PS & JE Ward	끌고 있던 수압트레일러 전선을 건드려 감전으로 원예 노동자 사망	- 진행 중
2013	R v Murray and Sons	노동자가 동물사료 배합기 빨려 들어가 사망	- 100,000 파운드 벌금
2013	R v Princes Sporting club Limited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소녀가 호수로 떨어져 사망 (야광헬멧 미착용, 산업안전담당자의 사고 이전 경고 무시)	- 135,579. 69 파운드 (회사의 전체 자산 총액) - 유죄사실 공개명령
2014	모바일 스위퍼즈		- 183,000 파운드 벌금 (회사 재산이 12,000 파운드였음) - 2개 지방신문에 공표명령 - 이사 자격정지 5년

첨부자료 4 : 기업처벌 현황(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I.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2014.11.5.)	2심 (2015.5.22.)	3심 (2015.09.24.)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묻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징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015. 10.16일 언론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죄명	1심	2심
----	----	----	----

		(2014.11.20.)	(2015.5.12.)
대표이사(김한식)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처분대상자 (당시 인천청 직급)	비위유형 (사유 구체)	감사원 처분요구	징계위원회 결정	최종 징계결과
박OO (주부관)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최종 인가 부당 처리 - 2012.8.14 청해진해운의 선박 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을 연장 승인 - 2013. 3. 14. 사업계획변경시 2011년도 조건부 인가 당시 자료를 근거로 계획변경을 검토하여 운송수입률이 관련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인가	정직	정직2월 (2015.3.6)	정직2월(2015.3.13) →감봉3월로 감경 (소청심사)
이OO (행정사무관)		정직	정직1월 (2015.3.6)	정직1월(2015.3.13.) →소청심사 안함
김OO (선원해사안전 과장)		정직	정직1월 (2015.4.10)	정직1월(2015.4.17) →감봉2월로 감경 (소청심사)
김OO (청장, 현재 국토부)		정직	감봉3월 (2015.4.10)	감봉3월(2015.4.24) →감봉1월로 감경 (소청심사)

○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 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변동이유 (감정내용)
이OO 팀장 책임검사원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 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정 (정직1개월→감봉3 개월)
조OO 선임 수석검사원	선령 연장검사 업무 태만	부지정	경고 (2014.11.11)	포상감정 (전책→경고)
전OO 선임검사원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정 (정직1개월→감봉3 개월)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전OO 주임	세월호 차량 및 화물적재초 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 검	징계	2015.7.7. 면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선박안 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운 항관리 직제와 정원 폐지)

○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의 유착관련

-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바지선이 아니라 <언딘>의 바지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 구조작업 지연
- 해경간부와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경간부 박 0 총경과 00 경감을 재판에 회부
- 관할 법원의 문제로 1년 이상 심리조차 열리지 않음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동아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금고 2년	금고 2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삼풍그룹,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 무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7년6월 + 3년)	징역 7년 6월 (업무상횡령 무죄로 3년 감형)	상고 기각
삼풍백화점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징역 7년	항소 기각	-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금고 2년	금고 1년	-
서초구청장 (이충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황철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	징역 2년 6월 추징금 1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사고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25명이었다. 삼풍그룹 회장, 삼풍백화점 회장, 삼풍백화점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7년 6월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붕괴 직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들의 안전보다는 영업손실만을 걱정하다 자신들만 대피했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보강공사를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경영진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도 예외적이지만, 그것조차도 죄에 비하면 처벌이 낮은 편이다.

4.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6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	-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상고기각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상고기각
운전사령실 사령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3~4년		상고기각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1인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상황 대처, 승객대피, 사령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나 비상유도등·피난로·소화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기소가 되긴 했지만,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 사고 직후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증거인멸혐의였다. 물청소는 유류품 및 실종자 시신이 다 수습되기 전에 이루어져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책임자 처벌에서도 드러난 힘의 차이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원심 양형	상고를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유지	모두 기각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6월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과 6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당시 상주시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6월(집유 2년)		
MBC PD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경호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		
민족문화교류협회 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향소포기	향소포기

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10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향소
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향소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무관	소방훈련 일지 허위 작성	징역 10월(집유 2년)	향소
경비과장인 사무관	허위 공문서	징역 8월(집유 2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경비원		금고 1년(집유 2년)	
관리과 8급 직원		벌금 800만 원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013.12.2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노177)
유스호스텔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향소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향소기각
코오롱트래블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해병대캠ป์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향소기각
캠ป์교육팀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교관 A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금고 2년 6월
교관 B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4월	향소기각

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94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 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향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설계감리	공사설계 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건축구조 기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포기
시공 (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A개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하청) A개발	대표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건설업)			
시공 (하청) E강제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영업부 상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강제 재하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향소포기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고의 근본원인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기소는 총 14명과 법인 1곳이 되었다. 구속기소는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 이었고, 불구속기소는 9명(법인 1곳 포함), 약식기소는 6명(법인 1곳 포함)이었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빠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관련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이 중 11명은 향소를 제기했다. 향소심 재판부는 7명의 형량을 줄여줬다. 1심에서 금고 2년 4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이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공기 단축뿐 아니라 폭설에 대한 관리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9.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115명 부상)

업체	직책	죄명	검찰 기소	1심 (2015.1.30.)	2심 (2016.3.9.)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4년	(무죄)	(무죄)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금고 4년	(무죄)	(무죄)
	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간부			(무죄)	(무죄)
	직원			(무죄)	(무죄)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방재주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법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용접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배관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사 수급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2년6월	
	직원A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	
	직원B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집유 2년)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2014고단1934)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검사)는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 직원 4명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11.21.)	2심 (2015.6.18.)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이유: 재판부는 이사장의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항소심 재판 중 숨진 김 모 피고인의 방화였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으며, “이 씨가 병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II. 산업재해

1.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 (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7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500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벌금2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1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

2.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 (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¹⁾	최종심
원청회사	(주)코리아2000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 벌금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벌금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법조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9조: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못박고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66조: 사업주가 가연성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코리아2000 냉동설비공사는 ‘코리아냉동(발주처)-코리아2000(원청) - 유성엔지니어링(하청)-한우.동신.HI코리아(재하청)-팀장(오야지)-건설일용근로자’의 구조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청업체인 (주)코리아2000은 하청업체의 인력운용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유성냉동설비(34명), 한우전기설비(17명), 아토테크에어컨설비 및 청소업체 직원(6명) 등이 공사를 하청받아 여러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공사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유증기가 가득 찬 위험한 공사현장에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했으며 공사 책임자는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셈이다.

(주)코리아2000은 24억의 냉동설비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억 이상 공사는 원청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를 위반하였다. 또한, 동법 제29조에 의거 자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청소속 근로자, 용역업체에서 온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등 각종 재해시 대처방안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0명이 사망한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과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주)코리아2000은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화재사고 관련자 10여명이 벌금 1,000만원 벌금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3.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67조: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

4.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5.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1,500만원
	안전과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300만원 또는 기소유예
하청회사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200만원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300만원

6.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직책	죄명	향소심	최종심
원청회사	대림산업(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벌금 3,500만원
	대림산업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회사	유한기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유한기술 제작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 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유한기술 안전팀 과장(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 원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2.19. 선고 2013노2217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에는 양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법원의 판단대로 회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수공장 공장장의 형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은 공장장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는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그 형이 낮추어진다면,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체’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체인 대림산업은 1, 2심에서 폭발사고 관련 위반 사실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겨우 대법원에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수억 원을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노동청의 특별감독(1000건이 넘는 위반)에서 드러난 안전상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존에 선고 받았던 벌금 3천만 원에 덧붙여 벌금 5백만 원을 추가로 선고 받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위반죄명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 책임으로 이러한 벌금형을 부과 받는 것이다. 이 위반죄는 중대안전사고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폭발위험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의 미이행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조적인 요인은 이러한 대형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이다. 중대한 사망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았다.²⁾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7.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사고(2013년 5월, 5명 사망)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 (검찰)
	생산본부장(부사장/안 전보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예방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 사회봉사160시간

경찰은 사고원인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등이 전로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았다.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산소 농도를 측정 한 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도 확인 되었다.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며, 현대제철 법인과 우유철·박승하 사장(복수 대표이사)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근로보수작업 총책임자인 현대제철 생산본부장 및 직원 8명과 하도급업체 한국내화 부사장을 포함한 직원 3명 등 총 12명을 기소했으나,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에 벌금 5천만 원, 생산본부 총괄책임자였던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

2) 심재진.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하였다. 부사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산소측정기를 지급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라면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았다. 법원이 원청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벌금만 부과하는 등 기업에 관용을 베풀었다.

8.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 사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 2년(집유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1년6월(집유 2년)
하청회 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2년(집유 3년)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박, 이씨에 대해 “(이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치를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일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 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8개월(법정구속)	징역 8개월(집유 2년)

하청회 사	하도급업체 삼성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	같은 혐의	징역 1년	징역 1년(집유 2년)
	감리회사 길평 소속 보조감리원 오모(44)씨			

10. 오룡호 침몰 (2014년 12월 1일, 27명 사망, 26명 실종)

- 2015년 6월 3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룡호 침몰 원인을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 강행, 침수 상황 대응 미숙,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한 항행, 적절한 하선 실패 등이라고 결론.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 씨 등 7명과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직원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 2015년 10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사조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공무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사조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선박직원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어선법위반·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이고, 부산수산청 승선공인 담당자는 선박직원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음.